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1-84 |
|----------|-------|

제출년월일 : 2011.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가 종전의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종전의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안 제12조제1항)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1.10. 6. ~ 2011. 10. 26.)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2)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동의

3) 조례·규칙심의회(2011.11.) : 원안의결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접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산업보존구역이 마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마포구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② ~ ④ (생략)</p> | <p>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 ----- ----- ----- 1킬로미터 ----- -----</p> <p>----. 다만, 인접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마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마포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